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3,462호 1991.9.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리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1.3.8, 법률 제436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을 연면적 1천6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건물 기타 시설물(상수보호구역등에서는 그 면적이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바다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의 골프장·관광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등으로 함(령 제2조)
- 나. 간역오수정화조의 설치대상지역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특별대책지역외에

상수보호구역·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등으로 하도록 함(령 제4조)

- 다.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신고대상인 것의 규모를 돼지사육시설의 경우 500제곱미터이상에서 250제곱미터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보다 그 규제를 강화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함(령 제7조 및 별표2)
- 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오염물질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2종으로 하고, 그 금액은 기본부과금 50만원에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령 제12조 및 제13조).
- 마.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오수정화시설·정화조등의 규모를 정함(령 제23조).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건물 기타 시설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 기타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축연면적(2동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 한다.
 - 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
 -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 라.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동법 제 25조

- 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 2.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고속국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소
- 3. 다음 각목의 1의 영업에 필요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단위업소별 바다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18홀 이상의 골프장의 경우에 한한다)
 -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
 - 다. 관장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 4.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단위업소별 바다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조(설계·시공업자외의 자가 정화조를 설계·시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 1. 건축주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이용하여 자기의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2. 연구를 목적으로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4조(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지역) 법 제15조 제 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 1.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
-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 관리구역
- 3. 기타 환경처장관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제5조(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

출시설의 설치허가(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을 예측한 내역서

②환경처장관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할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등) 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축산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지정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면제자로 지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경우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자에 대한 사후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축산폐수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이하 “자진신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을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지정하여 개선하게 하여야 한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개선·변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축산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하고자 하는 기간
2. 개선기간중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3.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축산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중에 개선명령에 명시된 내용의 오염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축

산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배출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로 한다.

제13조(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배출부과금은 수질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방류수수질기준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부과금 50만원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처리부과금”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를 한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에 한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은 다음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방류수수질기준 초과오염 물질 배출량×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 및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3과 같다.

제14조(오염물질배출량등)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오염물질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배출기간중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방류수수질기준일일오염물질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비정상운영개시일부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의 채취일)부터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다만,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방류수수질기

준을 초과한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로 한다.

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오염물질의 배출과정에서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축산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를 낮추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희석(환경처장관이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배출하는 경우

라. 기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초과농도에 그 날의 축산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4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15조(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처음 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5로 하며,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별부과계수는 신고횟수에 불구하고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 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제16조(부과금의 납부통지) 환경처장관은 부과금을 부과(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금액·

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과금의 조정) ①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제9조제3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 또는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 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조정결과 재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축산폐수 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개선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그 금액·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축산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환경처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 축산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납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환경처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처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부과금의 분납기한·금액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제20조(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업무를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 당해 시·도지사에게 징수된 부과금 또는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부과금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은 납입된 부과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등)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기증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기증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과징금의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오수등의 처리시설)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동일장소에 2기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정화조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이상인 분뇨처리시설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축산업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다만, 톱밥을 이용한 발효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인 톱밥발효돈사를 제외한다.
-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제24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등

- 의 등록을 한 자
-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설업의 등록을 한 자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환경부문 또는 환경부문중 수질관리분야의 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
- 환경관리공단
- 기타 환경처장관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준하는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5조(교육대상자)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의 분뇨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
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등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시공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정화조제조업자를 포함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제한의 권고
4.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서울특별시·직할시장이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제외한다.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
7.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개선명령
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부과·징수 등
9.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서울특별시·직할시장이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폐

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제외한다.

10.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한 승인
11.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선임 및 개입신고의 수리
1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의 지정

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개선명령
2.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개선명령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이나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6.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8.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9.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7조(과태료의 부과등) ①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수정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설치중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에 같음하여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배출부과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당해 배출부과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의 개시일이 이 영 시행일전인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이 영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별표2]의 구분란의 것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하고, 동표의 대상범위란의 1)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등의 유지·관리)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등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제7호중 “분뇨·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제5조 관련)

[별표 1]

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사육시설	면적 1,4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보호구역에서는 면적 700㎡이상으로 한다,
소사육시설	면적 1,2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보호구역에서는 면적 600㎡이상으로 한다.
말사육시설	면적 1,2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보호구역에서는 면적 600㎡이상으로 한다.

비고 : 동일 사업장내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면적을 합산한 것을 당해 시설의 규모로 한다. 다만, 다른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의 합이 1이상이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본다.

$$\frac{\text{제1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text{해당축산폐수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frac{\text{제2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text{해당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dots \geq 1$$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제7조 관련)

[별표 2]

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사육시설	면적 250㎡이상 1,400㎡미만
소사육시설	면적 350㎡이상 1,200㎡미만
말사육시설	면적 350㎡이상 1,200㎡미만
닭·오리사육시설	면적 500㎡이상
양사육시설	면적 500㎡이상

비고 : 동일 사업장내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면적을 합산한 것을 당해 시설의 규모로 한다. 다만, 다른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의 합이 1이상이면 신고대상 축산 폐수배출시설로 본다.

$$\frac{\text{제1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text{해당축산폐수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frac{\text{제2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text{해당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dots \geq 1$$

[표 4]

일일오염물질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 (제14조제3항 관련)
가. 방류수수질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방법

$$\text{일일오염물질배출량}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방류수수질 기준초과농도} \times 10^{-6}$$

- 비고 : 1. 방류수수질기준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농도
2. 방류수수질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3]

오염물질	구분	오염물질 1킬로그램 당부과액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이상	40% 이상 8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300% 이상 400% 이상	400% 이상
유기물질		500	1	1.6	1.7	1.8	1.9	2.0	3.0	4.5
부유물질		500	1	1.6	1.7	1.8	1.9	2.0	3.0	4.5

그램(mg/l)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text{일일유량} = \text{사육두수} \times \text{가축별 배출원단위}$$

비고 : 1. 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단위는 환경처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5]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징금금액
1.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9조제4항	2,000
가. 분뇨 수집·운반기준의 위반		
(1)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의 장소에 버린 때		800
(2) 기타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분뇨 처리기준의 위반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징금금액
(1)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때		2,000
(2) 기타 분뇨처리 기준을 위반한 때		200
2.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1항 법 제23조제1항	1,000
3. 사위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	법 제35조제1항	1,000
4.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법 제35조제1항	,000
5. 허가받은 업종의 분뇨관련영업을 한 때	법 제35조제1항	1,500
6.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35조제1항	800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35조제1항	
나. 사무실 또는 실		800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징금금액
협실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800
다.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가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라. 분뇨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800
마. 흡인식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800
7. 기준을 초과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때	법 제35조제6항	400
8. 기술요원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3조	800
9.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4조	800
10. 서류·시설 및 장비등의 출입·검사를 방해한 때	법 제46조제1항	800

건축계 소식

쏟음이 줄이기 운동 적극추진

본 협회는 소득의 증대와 개방의 자율화 과정에 편승하여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사치, 낭비성과 소비를 배격하고 공공생활 속의 쏟음이 줄이기로 근검절약정신 고양 및 분수에 맞는 생활등 건전사회 기풍 진작 선도로 국민계층 간의 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쏟음이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본 협회에서는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 및 근면운동을 파급시켜 전국민의 쏟음이 줄이기 운동을 유도하며, 각 시·도건축사회를 적극 지원하고, 반복, 지속적 계도 및 홍보로 건축계의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과소비를 조정하는 원천적 절감요인을 적극 발취하여 쏟음이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기로하였다.

공업화주택국제심포지엄 발표집 발간

대한건축학회(회장 신현식)에서는 지난 5월에 개최한 공업화주택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 토론된 자료를 모은 발표집(4×6판 510면)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기능인력 및 자재의 부족등 주택건설의 시의적인 환

경변화와 가증되는 주택의 양적 질적 수요에 대한 시대적인 대처방안으로서 공업화주택 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심포지엄 발표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건축 CAD '92 FAIR

건축사사무소와 건축관련분야에 근무하는 CAD실무자로 구성된 CAD동우회(회장 엄원석)에서는 건축(공)학과 대학생의 건축 CAD 탐구를 고취시키고, 건축분야 CAD의 합리적인

활용 및 우리나라 건축 CAD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 CAD 92 FAIR"를 개최한다.

- 일시 : 1992년 1월 24일(금)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강당